1.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교라 칭한다)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기본으로,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문화창달과 특성화된 교육으로 인간심성의 도야 및 자주의식을 확립하며, 전통과 현대문화의 계승앙양을 통해 국가번영과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3.01개정><2014.08.21개정>

제2조(조직) ① 대학원대학교는 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한다.

② 조직은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불교문예학과, 자연치유학과, 미래예측콘텐츠학과, 전공지원부 및 연구과정과 부속·부설기관을 두며, 필요한 경우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2014.03.01.개정><2014.09.01.개정><2016.08.10.개정><2022.10.11.개정>

③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6.09.28. 신설>

제3조(직제) 직제는 총장이 이사장과 협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후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학위과정·학생정원

제4조(학위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에 따라 석·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석사과정, 박사과정과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학과 간 협동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각 학위과정의 학과에는 세부전공을 둘 수 있다.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016.08.10.신설>

제5조(학생정원) ①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의거한 학과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 외국인과 계약학과 학생은 정원 외로 한다.<2017.09.01.개정>

② 연구과정의 입학인원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수업년한

제6조(수업년한) ① 석사과정의 수업년한은 2년(4학기) 이상으로 한다.

② 박사과정의 수업년한은 3년(6학기) 이상으로 한다. <2017.09.01.개정><2018.07.01.개정>

③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년한은 4년(8학기) 이상으로 한다.<2017.09.01.개정>

④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수업년한을 석사과정 1년, 박사과정 1년, 석·박사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2017.09.01.신설><2020.10.20.개정>

제4장 학년·학기

제7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① 대학원대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를 제1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제2학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6.08.10.개정><2017.09.01.개정><2018.07.01.개정><2018.09.01.개정><2020.06.16.개정><2020.10.20.개정>

② 제1학기 내에서 5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학기 내에서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학기 시작일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3.11.20.신설><2017.09.01.삭제><2020.06.16.신설><2020.10.20.개정>

③ 1항 외에 하계, 동계 방학기간 중에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7.09.01.신설><2020.10.20.개정>

제5장 수업·휴업일

제9조(수업일수) ① 대학원대학교의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2017.09.01.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고 매 학기 15주 이상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2017.09.01.①항에서 이동, 개정>

③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매학년도 2주 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2017.09.01.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과 제3항의 학교의 수업일수 내에서 매학기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한다.<2017.09.01.신설>

⑤ 수업은 주간수업(09:00~19:00)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토요일 수업, 집중수업, 현장실습, 사이버강의, 통신에 의한 수업도 운영할 수 있다. <2013.11.20.신설><2014.09.01.개정><2016.03.01.개정><2017.09.01.②항에서 이동><2018.07.01. 개정>

⑥ 수업은 학과와 전공분야의 특수성에 맞도록 진행한다.<2017.09.01.③ 항에서 이동>

⑦ 담당교수는 수업일 중 개인사유 및 외부활동으로 인한 휴강이 있을 경우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2013.07.01.신설><2017.09.01.③ 항에서 이동>

⑧ <2017.09.01.신설><2018.07.01. 개정><2020.10.20.삭제>

제9조의2(학점당 이수시간) ① 각 과정 및 전공별로 편성된 교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시간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학기 교과목별로 1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2017.09.01.신설>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이수시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17.09.01.신설>

제10조(휴업일) ① 대학원대학교의 휴업일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 운영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2017.09.01.개정>

1. 여름 및 겨울방학
2. 토요일 및 일요일
3. 국정 공휴일
4. 개교기념일(11월 4일) <2013.05.01.개정>
5. 총장이 법인의 동의를 받아 지정한 기념일

②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2주의 범위 내에서 총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2017.09.01.개정>

③ 정기 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 기간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④ 총장은 휴업기간 중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수업 및 실험실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입학·복학·편입

제11조(입학·전형시기) ① 대학원대학교의 입학은 매 학기 개시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입학전형의 세부규정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지원자격) 각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받을 예정인) 내·외국인.(단, 국외대학에서의 학점인정은 국가와 국가가 서로 학위를 인정하는 대학으로 한다.)<2018.07.01. 개정>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박사과정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받을 예정인) 내·외국인.(단, 국외대학에서의 학점인정은 국가와 국가가 서로 학위를 인정하는 대학으로 한다.)<2018.07.01. 개정>
③ 편입학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2016.03.01.신설>

제13조(취학제한) 전임교원은 원칙적으로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없다. 단, 학문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입학할 수 있으나, 재학기간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제14조(전형방법)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구술시험, 필답시험 중에서 총장이 정한다.
1. 서류심사 : 대학 및 대학원의 학업성적을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2. 구술시험 :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지식·열정·적성·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평가
3. 필답시험 : 외국어 및 전공영역을 평가

제15조(지원서류) 각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복학 및 재입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부에 제출하고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1.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
2. 제적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제17조(편입) ①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등록·휴학·제적

제18조(등록)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2017.09.01. 개정> <2018.07.01.개정>
1. 정규등록은 각 과정별 수업년한까지의 등록을 말한다. 단, 수료학점을 정규등록 학기 내에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수료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정규등록 하여야 한다.<2017.09.01.개정><2018.07.01.개정>
2. 연구등록은 각 과정별 수료자가 하는 등록을 말한다.

② 등록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등록금책정) ① 등록금은 수업의 특성과 학생정원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하고,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 후 공고 및 관할청에 보고한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 관련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입학금은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에게 부과하며 등록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④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등록금심의에 관한 사항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기타납입금) 논문지도비·실험실습비·학생자율회비·기타비용은 등록금과 함께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학생권한) ①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의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② 각 학위과정 수료자가 학위 취득을 위하여 연구등록을 한 경우에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의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③ 휴학생은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1조의2(장애학생지원)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학습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2016.03.01. 제57조의2에서 이동>

제22조(등록금 반환)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관할청령으로 정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휴학)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을 경유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의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과정은 1년,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단, 신입생은 휴학할 수 없다. <2013.05.01.개정><2016.05.25.개정>
③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병역 의무기간 동안 휴학을 인정한다.
④ 학기 개강일 이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학 할 수 있다.<2017.05.12. 신설>

제24조(제적) ① 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할 수 있다.
② 자진하여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학칙 제64조에 의한 징계사항이 제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제적한다.

제8장 교과과정·수강신청·수료학점

제25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 편성은 각 학과에서 정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2014.12.16개정>
②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은 교학처장, 기획실장, 교학부장, 각 학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2013.09.01삭제><2014.12.16신설>
③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전공과목, 연구윤리, 논문연구, 선수과목으로 한다.<2019.02.01. 개정>
④ 학과별 교과과정은 최종 개편된 교과목으로 운영한다.<2017.09.01.신설>

제26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2013.11.20 개정>

제27조(학점교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점인정을 위한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수료학점) ① 과정별 수료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11.20개정><2014.12.16개정><2015.02.11개정><2015.04.21개정><2016.03.01개정><2019.09.17.개정><2020.11.12.개정>

1. 석사과정 28학점 이상
2. 박사과정 39학점 이상
3. 석·박사통합과정 57학점 이상

②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2016.08.10.개정><2019.04.19.개정>

제29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각 과정별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을 원칙으로 한다.<2013.11.20개정>

② 계절학기 이수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2017.09.01.삭제><2020.06.16.신설>

③ <2013.11.20.신설><2016.08.10.개정><2017.09.01.삭제>

④ <2017.09.01.신설><2018.07.01. 삭제>

⑤ <2017.09.01.신설><2018.07.01. 삭제>

⑥ <2017.09.01.신설><2018.07.01. 삭제>

제30조(재입학생 학점인정)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였을 때는 제적되기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2013.05.01개정>

제31조(학점인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2. 편입생의 전적교에서 취득한 학점
3. 위 각호의 학점인정 범위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타 학과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2조(성적평가·재수강) ① 학업성적 평가등급은 A+· A0· B+· B0· C+· C0· F로 구분 표시하고 자세한 평가등급 표시는 아래와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95이상	4.5
A0	90이상	4.0
B+	85이상	3.5
B0	80이상	3.0
C+	75이상	2.5
C0	70이상	2.0
F	70미만	0

② 첫 번 수강한 과목의 성적평가가 F로 나온 경우 재수강할 수 있다.

제33조(평점인정) 학생의 수강과목별 학업성적 등급이 2.00(C0)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단,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3.00(B0) 이상이어야 한다.

제34조(학사경고) ① 한 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00이하 이거나 2과목 이상이 F학점인 경우 학사경고를 한다.
②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았을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제35조(수료시기) 학위과정별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36조(수료증발급) 각 과정에서 소정의 수업년한을 마치고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서식 1]의 수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2016.09.28.개정><2023.02.14.개정>

제9장 학과 및 과정의 변경

제37조(학과변경) ① 학과 변경은 석사과정은 두 번째 학기 초,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세 번째 학기 초 15일 이내에 학과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박사과정의 학점인정은 12학점까지 할 수 있다.<2013.05.01개정>
② 학과변경 신청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3.05.01신설>

제37조의2(과정변경) ①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변경은 4학기초에,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이내에 과정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2013.09.01개정>
② 과정변경 신청은 1항의 기간 내에 학과장 회의를 거쳐,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특별한 경우에 예외로 할 수 있다.<2017.09.01.개정><2023.02.14.개정>

제10장 자격시험

제38조(외국어시험)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과정은 영어·중국어·일어·한문 중 1종의 외국어시험에, 박사과정은 영어와 제2외국어(중국어·일어·한문 중 1종)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본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 강좌를 이수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9조(종합시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40조(시험시기 및 재시험)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한다.
②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

제41조(합격기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각 과목에 대한 시험성적의 합격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1장 학위논문

제42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분야 특성을 참조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43조(연구계획서 제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는 정해진 기간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예비심사) ①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학생은 예비심사를 위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09.01개정><2019.04.19.개정>
② <2014.09.01 삭제, 제46조 3항으로 이동>

제45조(논문규격)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단,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논문제출) ① 예비심사에 통과되어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2014.09.01개정>
② 학위논문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박사학위과정은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의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2013.11.20.개정><2014.09.01.개정, 이동><2014.12.16.개정><2016.08.10.개정><2017.02.09.개정><2019.04.19.개정><2019.08.01.개정>
④ 제3항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 학생은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장이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게재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2019.08.01.신설>

제47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예비심사(학위논문원고)와 본심사(학위논문)로 구분 실시한다.<2014.09.01개정>
②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원고)제출자에 대하여 논문심사와 병행하여 구두시험을 행할 수 있다.<2014.09.01개정>

제48조(심사위원) ① 예비심사는 각 학과전임 및 석좌교수와 논문지도교수가 실시한다.<2013.11.20개정>
② 논문 본심사는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교수나 비전임교원으로 연구업적이 우수한자로 학과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 석사과정 3명, 박사과정 5명의 심사위원이 한다.<2013.12.01개정>

제49조(심사위원장) ① 논문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심사위원장의 의결권은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50조(심사의결) 논문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석사과정 3분의 2 이상, 박사과정 5분의 4 이상 찬성에 의한다.

제51조(논문제출 시한) 학위논문의 제출시한은 석사과정은 학생이 수료한 날로부터 6년,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10년 이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논문제출 시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종합시험을 재응시, 합격하여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장 학위수여

제52조(학위수여) ① 학위는 각 수료과정 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하며,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우리 대학교가 정한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복수학위과정은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하던 자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 석사학위 수여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석사, 박사 학위기는 별지[서식 2, 3, 4]으로 수여한다.<2013.05.01.개정><2016.09.28.개정>
⑥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2조의2(복수학위제) ① 우리 대학원대학교와 외국의 대학교대학원간에 협약체결에 따라 양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각각의 석사학위를 복수로 수여할 수 있다.

② 복수학위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3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단, 교육부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2014.12.16개정>

제54조(학위수여의 취소)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하였거나 박사학위 논문이 수준미달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학위종별) ① 학위는 원칙적으로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단, 우리대학교가 정한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2016.08.10.개정><2018.0.01.개정><2019.02.01.개정><2020.04.09.개정><2021.05.13 개정>

제13장 연구생·외국인학생

제56조(연구과정) 석사학위 과정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57조(연구생) ① 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으로 입학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연구생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연구생으로 연구 성적이 좋은 자에게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연구생의 이수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이수기간 연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57조의2(장애학생지원) <2016.03.01.삭제, 제21조의2로 이동>

제58조(외국인학생) ①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서 입학을 원할 때에는 특별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장 명예박사 학위

제59조(자격) 우리나라 문화와 예술 및 학술에 특수한 공헌이 있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60조(학위기 및 학위종별) 명예박사학위는 별지[서식 5]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하며, 그 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2013.05.01개정>

제61조(학위수여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5장 학생활동·상벌·장학금

제62조(원우회) ①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원활한 학사행정을 보조하기 위하여 원우회를 둔다.
② 원우회는 각 학과 대표자로 구성하며 회장과 간사는 원우회에서 호선한다.<2014.09.01개정>
③ 원우회장 및 임원은 각 학과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3학기 이상 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우회의 임기는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하고, 회장 및 임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⑤ 원우회의 운영에 관한 회칙 및 그 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학생들의 학교생활지도와 원우회의 제반업무는 교학처 교학부장의 책임으로 한다.
⑦ 학생 및 원우회는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개인 또는 집단적인 어떠한 행위와 활동을 할 수 없다.

제63조(포상) 학업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64조(징계) ①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에게는 진술의 기회를 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5조(장학금지급 대상)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자금 곤란으로 학업을 계속함에 지장이 있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장학금지급 절차) ① 장학금을 지급 받을 학생은 각 학과 학과장의 추천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장학금 지급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67조(장학금지급 중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퇴학·제적 또는 징계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해당 학기에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한다.

제16장 교원·보직교수·교수회·대학원위원회

제68조(교원)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전임교원은 정년제와 비정년제로 구분한다.
② 학제 및 연구학과간 공통과목을 담당할 교원은 전공지원부로 소속된다.<2014.09.01신설>
③ 전임교원은 각 학과에 소속되며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연구교원으로 발령한다. 연구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소속된다.<2014.09.01개정, 3항으로 이동><2023.05.11.개정>
④ 제3항의 교원은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2014.09.01 4항으로 이동>
⑤ 각 학과의 교과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석좌교수·초빙교수 등 교육과 논문지도를 전담하는 교수를 총장이 위촉한다.<2014.09.01 5항으로 이동>
⑥ 제5항의 교수 위촉은 비전임교원임용규정을 따른다.

제69조(교원의무) ① 교원은 교수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② 교원은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 학교기여도 등의 실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③ 연구교원은 연구만을 전담한다. 단, 필요한 경우 대학원 강의를 할 수 있다.<2014.09.01신설><2023.05.11.개정>
④ 제2, 3항의 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원인사에 반영한다.<2014.09.01 4항으

로 이동>

제70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3개 과목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사제도의 변경과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이 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원대학교 보직을 겸임하는 교수의 교수시간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1조(학과장·논문지도교수)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두고 개별 학생의 논문 지도를 담당하는 지도교수를 둔다.<2013.05.01개정>

제72조(보직) 총장은 이사장과 협의하여 행정부서의 장과 부속·부설기관의 장을 전임교원 및 일반직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3조(교수회 조직) 학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둘 수 있다.

제74조(교수회 구성)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총장은 비전임 교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75조(교수회 소집) 전체 교수회는 총장이, 학과 교수회는 학과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13.05.01개정>

제76조(교수회 개회) 교수회는 재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77조(교수회 기능) 교수회는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학생 평가시험 및 그 사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위원회 심의 이외의 사항.

제78조(대학원위원회 구성) ① 대학원대학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대학원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각 부속·부설기관의 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원위원회의 소집은 총장이 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9조(대학원위원회 임기) ①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0조(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대학원대학교의 교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대학원대학교의 규정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부속·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5. 협동연구과정과 특별전문과정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학생상벌과 공개강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1조(대학원위원회 의결) 대학원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1조의2(대학평의원회) 정관 제31조의 2에 의해 우리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2018.09.01. 신설><2018.10.01. 개정>

제17장 공개강좌·외국어강좌·전문과정

제82조(공개강좌) ①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교양·연구상의 학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기간·수강인원·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매 개강 시에 교학처장이 이를 정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발표한다.

제82조의2(외국어강좌) 재학생의 전공연구와 교양제고를 위하여 각 학과 교육과정에 외국어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82조의3(전문과정) 각 학과의 전문성과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학과와는 별도로 전문과정·지도자과정·최고위과정·특별과정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장 부속·부설기관

제83조(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1. <2014.02.11삭제>
2. 평생교육원<2013.05.01신설>
3. 중앙도서관

② 평생교육원에서는 원격교육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2013.05.01신설><2014.03.01개정>

③ 제1항의 부속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84조(부설기관) ①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설기관을 둔다.

1. 동방신보사
2. 동방출판사
3. 교수학습지원센터<2014.12.16.신설>
4. 학생상담센터<2014.12.16.신설>
5. 동방어학원<2016.05.25.신설>
6. 인권센터<2022.05.10.신설>

② 제1항의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85조(부설연구기관) ①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설연구기관을 둔다.<2013.05.01.개정><2016.02.01.개정><2017.03.01.개정>

1. 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
2. 환경조형예술연구소

3. IT융합연구소
4. 불교문화예술연구소
5. 자연치유연구소
6. 동양학연구소
7. 자격검정운영본부

② 제1항의 부설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장 산학협력단

제86조(산학협력단 설치) ① 우리 대학교에 산학협력교육과 연구 및 사업을 촉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학교법인 정관 제78조의2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87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설치는 산학협력단장의 제안으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

제20장 대학평가

제88조(자체평가) ①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장 보칙

제89조(학칙개정)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이상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 공포한다.

제90조(시행세칙) 이 학칙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8조 및 제29조는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9조와 관련하여 이 학칙 개정 당시 학생에게는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8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명상요가학과 2008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제2조(조직), 제5조(학생정원), 제55조(학위종별)의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명상요가학과, 명상요가학석사, 명상요가학박사)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조(조직)의 조형칠예학과는 2010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옻칠조형학과 2009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제2조(조직), 제5조(학생정원), 제55조(학위종별)의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옻칠조형학과, 옻칠조형학석사, 옻칠조형학박사)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조(조직)는 2011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조(조직)는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11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의 제55조제1항(학위종별)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조(조직)의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불교문예학과, 교육학과, 자연치유학과, 미래예측경영학과는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제55조(학위종별)는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원할 경우 변경 및 신설된 학과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4. (경과조치) 제10조(휴업일)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2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5조(교과과정)는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4조(예비심사) 제2항의 종전규정은 재학생들에게 2016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조(조직), 제5조(정원), 제55조(학위종별)은 2014학년도 입학한 학생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8조(수료학점) 제1항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제84조(부설기관) 제1항 제3호, 제4호는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5조(교과과정) 제3항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제28조(수료학점) 제1항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8조제1항은 2019학년도 2학기 논문과목 수강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조(조직)의 미래예측콘텐츠학과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2014.03.01 개정>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개설학과 및 정원

1. 석사학위과정

계열	개설학과	정원	
		입학정원	총정원
인문·사회계열	문화예술콘텐츠학과	12명	24명
	불교문예학과		
	자연치유학과		
	미래예측콘텐츠학과		
계		12명	24명

2. 박사학위과정

계열	개설학과	정원	
		입학정원	총정원
인문·사회계열	문화예술콘텐츠학과	30명	90명
	불교문예학과		
	자연치유학과		
	미래예측콘텐츠학과		
계		30명	90명

3. 석·박사통합과정

계열	개설학과	정원	
		입학정원	총정원
인문·사회계열	문화예술콘텐츠학과	24명	96명
	불교문예학과		
	자연치유학과		
	미래예측콘텐츠학과		
계		24명	96명

[별표 2]<2014.03.01 개정><2018.07.01 개정><2019.02.01개정><2020.04.09개정>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학위종별

1. 석사학위 종류

개설학과	학위종별(전문학위)	영문학위명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문화예술학석사('이수전공명')	M.A. in Culture and Arts('Major')
	불교문예학석사('이수전공명')	M.A. in Buddhism Culture and Arts('Major')
불교문예학과	음식문화학석사('이수전공명')	M.A. in Food and Culture('Major')
	상담심리학석사('이수전공명')	M.A. in Counseling Psychology('Major')
자연치유학과	자연치유학석사('이수전공명')	M.A. in Naturopathy('Major')
	동양철학석사('이수전공명')	M.A. in Eastern Philosophy('Major')
미래예측콘텐츠학과	교육학석사('이수전공명')	M.A. in Education('Major')
	경영학석사('이수전공명')	M.A. in Business Administraion('Major')

2. 박사학위 종류

개설학과	학위종별(학술학위)	영문학위명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문학박사	Ph.D. in Arts and Literature
불교문예학과	철학박사	Ph.D. in Philosophy
자연치유학과	교육학박사	Ph.D. in Education
	경영학박사	Ph.D. in Business Administraion
미래예측콘텐츠학과	자연치유학박사	Ph.D. in Naturopathy

개설학과	학위종별(전문학위)	영문학위명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문화예술학박사('이수전공명')	Ph.D. in Culture and Arts('Major')
	불교문예학박사('이수전공명')	Ph.D. in Buddhism Culture and Arts('Major')
불교문예학과	음식문화학박사('이수전공명')	Ph.D. in Food and Culture('Major')
	상담심리학박사('이수전공명')	Ph.D. in Counseling Psychology('Major')
자연치유학과	자연치유학박사('이수전공명')	Ph.D. in Naturopathy('Major')
	동양철학박사('이수전공명')	Ph.D. in Eastern Philosophy('Major')
미래예측콘텐츠학과	교육학박사('이수전공명')	Ph.D. in Education('Major')
	경영학박사('이수전공명')	Ph.D. in Business Administraion('Major')

[서식 1]<2016.09.28.개정>

수료 제○○호

수 료 증

○ ○ ○
○○○○년 ○○월 ○○일 생

전공 :

위 사람은 본 대학원대학교(○○과정) ○○○○학과 ○○○○○전공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20○○년 ○○월 ○○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 ○○박사 ○ ○ ○

[서식 2]<2016.09.28.개정>

석 제 호
학위등록번호 : 동방문화 ○○석○○

학 위 기

○ ○ ○
○○○○ 년 ○○월 ○○일 생

논문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학 석사(○○○○전공)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위의 증명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20○○년 ○○월 ○○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 ○○박사 ○ ○ ○

[서식 3]<2016.09.28.개정>

박 제 호
학위등록번호 : 동방문화 ○○박○○

박 사
학 위 기

○ ○ ○
○○○○ 년 ○○월 ○○일 생

논문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박사과정을 이수하여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학(○○○○전공) 박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위의 증명에 의하여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년 ○○월 ○○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 ○○박사 ○ ○ ○

[서식 4]<2016.09.28.개정>

학박 제 호
학위등록번호 : 동방문화 ○○학박○○

박 사
학 위 기

○ ○ ○
○○○○ 년 ○○월 ○○일 생

논문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박사과정을 이수하여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위의 증명에 의하여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년 ○○월 ○○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 ○○박사 ○ ○ ○

[서식 5]

명박 제 호
학위등록번호 : 명박○○ 제 ○○호

(국적)

박 사
학 위 기

○ ○ ○
○○○○ 년 ○○월 ○○일 생

위의 사람은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큰 공헌을 하였(인류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냈)기에 우리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선양하고자 이에 추천함.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년 ○○월 ○○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 ○○박사 ○ ○ ○